

1997년도

사회복지 예산(안) 분석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 1997년도 사회복지 예산규모

1997년 사회복지
확충부문의 예산은
1996년 대비
16.6%가 증가한
4조 289억원으로써,
전체 예산증가율
13.7%를 상회하고
있다.

1997년 사회복지 확충부문의 예산은 1996년에 비해 16.6%가 증가한 4조 289억원으로써, 전체 예산증가율 13.7%를 상회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5.49%에서 1997년 5.63%로 증가할 전망이다¹⁾. 각부문별 증가율을 보면, 보건 4.8%, 사회보장 및 복지 20.6%, 국가유공자지원 11.8%로서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이 전체 증가율을 주도하고 있다.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중 공적부조 및 복지서비스는 28.5%, 사회보험은 11.8% 증가함으로써 주로 공적부조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예산지원이 증가하였다(예산안의 구체적 내역은 권말 통계표 참조). 이는 1995년에 운영된 국민복지기획단에서 제안한 복지재정규모의 증가폭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여기서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와 재정융자(순계)를 합한 재정규모로써, 1996년 62조 9,626억원, 1997년 71조 6,020억원임. 1997년 일반회계는 67조 7,800억원, 재정융자(순계)는 3조 8,220억원임.

〈국민복지기획단(1995)의 제안〉

- 2010년까지 선진형 사회복지 구현을 위한 복지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일반재정증가율 보다 1.2배씩 높게 책정해 나감.
- 일정한 가정하에서 연평균증가율은 18% 내외 수준임.
(가정: 경상GNP증가율 12~13%, 중앙정부 재정증가율 14~15%)
- 복지예산중 공적부조 및 복지서비스 부문 예산은 2000년까지 대폭 확대하도록 함.

2. 1997년도 사회복지예산(안)의 특징

1997년도 사회복지 확충부문 예산안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부조부문 예산이 전년에 비해 31%가 증가하는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보훈 예산을 제외한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38.6%를 차지함으로써 '96년의 34.8%에 비해 크게 신장된 것이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은 우선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46.7%가 증가하였고 다음으로는 의료보호예산이 39%가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의료보호는 공적부조예산의 40%로써 공적부조 예산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기여도 50%).

둘째, 공적부조예산중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 및 시설보호자에 대한 생활보호수준이 최저생계비의 80%에서 93%로 상향 조정된 것은 1998년까지 최저생계비의 100%를 지원하겠다는 국민복지기획단의 제안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수준의 개선은 생활보호대상자수의 감소에 의해 부분적으로 가능하였다. 즉 거택 및 시설보호자 수가 '96년 37만1천명(거택 29만 5천, 시설 7만 6천)에서 '97년 36만 8천명(거택 29만1천, 시설 7만7천)으로 감소하고 있다. 자활보호를 포함한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수도 150만 6천명에서 140만 7천명으로 10만 여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셋째, 복지서비스예산 증가율은 전년대비 19.5%로서 평균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공적부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약하다. 다만,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의 이용시설의 신축 및 기능보강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넷째,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대한 지원액이 거의 1조원에 육박하고 여전히 복지예산(보훈 제외)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지역조합의 재정안정은 크게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주어진 국고지원예산을 지역조합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정책적인 중점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보호를 포함하면 전체의 48%로서 거의 1/2이 의료보장

1997년도

사회복지예산(안)의

특징은

공적부조예산이 31% 증가하는 반면, 복지서비스예산은 19.5%, 국민보건 및 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은 4.8% 증가에 그치고 있다.

거택·시설보호자에
대한 생계보호
수준이 최저생계비
80% 수준에서
93%로
상향조정되었다.

을 위해 지출된다.

다섯째, 국민보건 및 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은 전년에 비해 4.8% 증가에 그쳤다. 이것은 보훈을 제외한 전체 복지예산의 13.9%로서 '96년의 15.7%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현재 의료자원의 공급기반이 민간중심이기는 하지만 지역간 의료자원의 분포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건소 등에 대한 의료인력 및 장비 지원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으며, 민간의료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지원과 장기적으로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기초과학 및 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3. 부문별 예산안 분석

1997년도 사회복지예산의 각부문별 내용을 보기로 하자. 각 부문별 예산안에 국민복지기획단이 제안한 내용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는 본고의 후미 <표 1>에서 <표 3>으로 정리되어 있다.

가. 공적부조 예산

첫째, 생계보호 수준 및 방법: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시설보호자에 대한 생계보호 수준이 최저생계비의 80% 수준에서 93%가 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그러나 거택보호대상자수의 감소는 과학적인 자산조사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거택보호자 가구에 대하여 생활용품비를 월 1만원 신규 지원하며 생보대상자에 대해 10만원의 출산수당을 신규로 지원함으로써 차등급여제가 부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특히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확대는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생보노인에 대한 노령수당이 인상되고 지급대상이 확대된 반면 저소득 일반노인에 대한 지원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생보장애인에 대한 생계보호수당의 인상과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되었으나 장애수당제도로 전환되지는 못하였다.

둘째, 의료보호 지원 강화: 급여기간의 연장과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화가 실현되고 보험수가와의 격차가 부분적으로 축소된

다. 그러나 당년도 예산부족의 다음년도 반영의 법제화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셋째, 교육보호 지원대상 확대: 생보대상자 자녀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은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전 인문고생까지 확대한다. 그러나 육성회비 지원과 (전문)대학 학자금 용자제도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넷째, 자립·자활사업 지원: 「자활지원 센터」 운영이 신규로 지원되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청소년문화센터를 설립하는 제안이 「청소년 생활지도 프로그램」으로서 신규로 지원된다.

나. 복지서비스 예산

첫째,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 보강: 수용자 1인당 지원 금액을 '96년 대비 20% 인상(아동·부랑아시설은 25%)하여 수용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수용시설은 18개가 늘어난 787개가 되지만 시설수용인원은 1% 증가에 그친 7만 6,769명이 된다.

둘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재가복지가 강조됨에 따라 재가봉사센터의 운영·지원이 확대되며 장애인그룹홈 사업을 신규 지원한다. 특히 아동그룹홈의 신규사업과 정신대할머니에 대한 대폭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치매요양시설과 치매전문병원이 신축된다. 65세 이상 생보노인에 대한 암검사는 반영되지 못하였고, 보건소를 노인성질환의 1차 진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치매상담 및 신고센터를 부설·운영하는 데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

셋째, 영·유아 보육사업을 『영·유아 보육사업 확충계획('95~'97)』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저소득 계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에게는 전액 면제하고 기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30%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사회복지관에 자원봉사센터의 신설과 학교사회사업의 시범실시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한편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해 공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지원을 확대하고, 장례예식장 설치 희망자에 대한 용자지원 금액을 증액하고 사설 납골당 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이 강화되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재가봉사센터 운영지원이 확대되며, 생보대상자 자녀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료의 면제가 이루어진다.

의료보험의
급여기간 연장,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 등에
따라 지역의료보험
국가지원 예산이
1조원에 달한다.

축에 대한 용자사업을 신규로 반영한다.

다. 사회보험 지원예산

지역의료보험의 급여비지원은 수가인상률, 수진율 증가 등을 감안하여 '96년 대비 16% 증액하였다. 보험 급여기간 연장(240→270일)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포함에 따른 소요를 신규로 반영하여 국고지원예산이 거의 1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95, '96년과 같은 급속한 의료비 증가 추이가 지속된다면 16% 증액으로 부족할 것이고 그 부족분은 보험료인상, 국고지원의 효율적 배분, 조합간 재정공동사업 확대 등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라. 보건·의료기반의 확충 예산

첫째, 보건·의료과학기술의 진흥: 고부가가치·첨단산업인 보건·의료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 분야는 의과학·식품·의약품·의료기기 산업 등이다. 32%의 획기적인 예산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적인 투자금액이 아직 낮다.

둘째, 국민보건·의료기반의 조성: 민간에서 투자하지 않는 특수분야에 대한 국립병원의 전문화, 지역의료기반의 확충을 위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신증축 및 장비보강, 응급의료 장비의 구입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등에 대해 예산지원이 대폭 이루어져야 하나 예산증가율은 1.3%에 불과하다.

표 1. 국민복지기획단 제안의 1997년 예산안 반영(공적부조부문)

		국민복지기획단 제안	1997년 예산안 반영
생 계 보 호	수 준 · 방 법	• 생계보호수준: '98년까지 최저 생계비의 100% 보장	• 최저생계비의 93% 보장
		• 생계보호방식의 보충급여제 전환 • '97년 차등급여제 실시	• 거택보호자에 생활용품비 월 1만원, 출산수당 10만원 지원
	노 인	• 노령수당(70세 이상 생보노인)의 연령 하향조정, 저소득일반노인에 대한 확대, 급여수준 인상	• 65세 이상으로 하향, 노령수당 3만원 → 3만 5천원으로 인상
	장 애 인	• 현재 1, 2급 중증장애 생보대상자에 대한 월 4만원의 생계보조수당제도를 장애수당제도로 전환 • 적용범위는 생보대상자를 바탕으로 전장애인에게 확대	•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만원 → 4만 5천원으로 인상, 지원대상을 1급장애·2급중복장애 → 1급장애·2급거택보호자로 확대
의 료 보 호		• 의료보호 당년도 예산부족은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법제화 • 의료보호수가의 종별가산율 인정, 급여내용을 의료보험과 동일 적용	• 보호수가와 보험수가의 격차를 3개년간 해소(소요의 30% 반영), 급여기간 30일 연장, 장애인 보장구 급여 포함.
교 육 보 호		• 교육보호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을 실업계고교에서 '98년까지 인문계고교로 확대 • '97년 육성회비, '99년 교재비까지 확대 지원 • (전문)대학 학자금 융자제도 '97년 실시	• 전 인문계고교까지 확대
자 활 보 호		• 자활지원센터 설립 '96년 5개 시범운영	• 자활지원센터 10개 신규지원
		• 자활기금의 조성운영	-
		• 저소득밀집지역에 '97년 공공도서관,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 청소년생활지도 프로그램 10개소 신규지원

생계보호의 차등급여제와 보충급여제 시행, 저소득 일반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지원, 장애수당제도의 도입 등이 정책과제로 남아 있다.

재가복지의 확대·강화, 자원봉사센터의 신설, 보육시설 확대, 학교사회사업의 시범 실시 등이 정책과제로 남아있다.

표 2. 국민복지기획단 제안의 1997년 예산안 반영(복지서비스 부문)

	국민복지기획단 제안	1997년 예산안 반영
재가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복지봉사센터(334개) 운영을 사회 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에 확대 실시 • 예산지원대상(178개) 범위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봉사센터 운영지원 (162개 → 187개)
노인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기관(23개소) 을 2000년까지 전체 재가복지봉사센터 로 확대 • 노인종합복지센터의 연차적 확대 • 노인정 '97년 운영비 월 1만원, 난방비 연 2만원 • 노인의 집(Group home)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봉사서비스 확대 (50개 → 85개소) • 양로시설(2개), 노인복지회관(7개), 경로당 지원액 인상 (월 3만 → 4만원)
노인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생보노인에 대한 무료건강 검진에 간암, 위암 등 암검사 추가 • 치매, 중풍노인을 위한 노인전문요양 시설을 '98년까지 16개소로 확충 • '97년까지 치매종합센터 설치, 치매 원 격진료 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 노인전문병원 '98년까지 15개소 설치 • 보건소에 인력, 물리치료실 장비 보강 하여 노인성질환 1차진료기관으로 육성, 치매상담 및 신고센터 설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요양시설 신축(6개), 증축(2개) • 치매전문병원 신축(3개) • 요양시설(4개), 실비요양시설(2개) 신축지원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그룹홈 확대운영,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을 전체 복지관에 연차적 으로 부설(매년 5개소씩 2000년 30개소) •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24개소)를 전체 장애인복지관으로 확대: 가정과 시설간 연결 특수차량, 이동 목욕차량을 '98년부터 연차적으로 제공 • 장애가구 자립자금융자 대상과 금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그룹홈 5개 신규지원 • 장애인재활시설(2개), 장애인복지관(5개) 신축지원 •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확대(49개 → 52개) • 재가봉사서비스 확대 (29개 → 38개) • 자립자금대여 확대(재특)
자원 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관(297개)에 지역단위 자원봉사센터 신설 	-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97년까지 공공시설은 4,800 개소, 민간시설은 8,90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 150개, 증축 125개, 부설설치 825개소 지원 • 생보대상자 자녀 보육료 면제, 저소득층 30% 면제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사회사업: '98년까지 6개교 시범사업 	-

표 3. 국민복지기획단 제안의 1997년 예산안 반영(사회보험 부문)

	국민복지기획단 제안	1997년 예산안 반영
의료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보험 급여기간 240일('96년)에서 매년 30일씩 확대하여 2000년에 제한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급여기간 30일 연장(240일 → 27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등 필수의료 용구의 보험급여 확대 틀니·안경·보청기 등 노인의 기능 저하에 따른 기구에 대한 보험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보장구 급여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예산의 조합간 효율적 배분이 정책과제이다.

1996년 10월 !

『보건복지포럼』이 창간되었습니다.

⋮



보건복지정책과 관련한 현안과제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국내외 정책동향에 대해 보다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보건복지포럼』은 여러분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구입문의: 02) 353~1570
02) 355~8003(교환: 308, 309)